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구분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및 관리 교육

교육자료 : 교육자료 참조(자체제작)

강 사 : 이 웅 

1 차 2022년 02월 28일 (월) 08:30 ~ 09:00 (30분)			2 차 2022년 03월 01일(화) 08:30 ~ 09:00 (30분)		
연번	성명	서명	연번	성명	서명
1	전혜령	전혜령	1	차은혜	은혜
2	함귀옥	함귀옥	2	박연숙	연숙
3	이정숙	이정숙	3	민여기	여기
4	김명희	김명희	4		
5	류보영	보영	5		
6	김은신	은신	6		
7	이서호	이서호	7		
8	이정라	정라	8		
9			9		
10			10		
11			11		
12			12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우리집요양원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문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겹옷 때 혹은 안을 때의 어려움을
-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젖어짐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구멍통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대소변 냄새, 땀,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 의복 및 이발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자기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노인을 사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신고 받은 학대사태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 사례>

1. 경어 미사용 :

- 공식 호칭 : “0 0 0 어르신”
- “엄마” 사용 불가
- 존대말인지 하대하는 말인지 모호한 언어 사용 금지

2. 기저귀 교체 시

- 반드시 “기저귀 갈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지 후 실시
- 수치심 주는 언동 금지 : “또 x 샀어.” “대박쳤네” 등 본인에게 면박주는 언동 절대 금지
- 가림막 사용 필수

3. 목욕

- 목욕 전 후 이동 시 탈의 한 채로 이동하여 수치심 야기
⇒ 입소실 화장실 이용 및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몸 전체를 가리도록 보호조치

4. 도움 요청을 묵살

- 듣거나 보고도 못 들은 척 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지금 바쁘니까 있다가 해드릴게요” ⇒ 시간 끌고 잊은 척 하기

5. 짜증섞인 말투, 꾸짖는 말투, 큰 소리 등 언어폭력적인 언사 금지

- 난청으로 인한 큰 소리가 필요한 경우 귀 근처에 대고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하기
- “벌써 몇 번째야?” “미치겠네...”
- 도움 제공 후 큰소리로 한숨 쉬기

6. 차별화 서비스 미제공

- 개인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금지
- 타인과 차별화된 특혜 제공과 차별화된 서비스의 구분